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5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2. 06. 0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1/5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
- 제3장 운영위원회
- 제4장 재정
- 부 칙

작성부서	산학협력단	제정일자	2004. 03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						
서명							
일자							



규정

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

문서번호	TWP-A605		
제정일자	2004. 03. 01.		
개정일자	2012. 06. 04.		
내정번호	1	페이지	2/5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5
	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	제정일자	2004. 03. 01.
		개정일자	2012. 06. 0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3/5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(이하“센터”)와 중소기업청 및 기타 유관기관의 산학협력 사업을 총괄·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2조(사업 및 활동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
3.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
4.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실 사업
5.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
6. 산업체의 현장애로기술 지원
7. 기타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2장 조 칙

제3조(조직) 센터는 산학협력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 1명
2. 운영위원회
3. 사업수행 직원 약간 명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의 산학협력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6.4.]

제3장 운영위원회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5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2. 06. 04.
		개정번호	1

제5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참여기업 대표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결정
2. 신청 과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(안) 상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센터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4장 재 정

제8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출연금, 참여기업부담금, 자체지원금, 기타보조금 등으로 한다.

② 본 재정은 센터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9조(사업비 운영) ① 사업비는 각 사업의 세부운영지침과 이 대학교 『연구관리업규정』에 따라 관리한다.

② 본 센터의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내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센터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얻어 집행한다.

③ 연구비사용과 정산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5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2. 06. 0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5/5

제10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장은 운영계획(안)과 예산(안)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(내역)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